##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0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김윤덕·조인철·이기헌

이춘석 • 윤준병 • 박해철

허 영·김교흥·임오경

안태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 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 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절 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 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송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	
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방송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방
	<u>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u>
	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